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. 6. 25 선고 2018가단571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19. 5. 21

판 결선고 2019. 6. 25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, 전남 보성군 C 답 3,000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중 별지 도면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1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100㎡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, 2, 7, 8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무허가 건물(창고)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 15㎡를 철거하고, 위 (가) 토지 100㎡를 인도하고, 2015. 10. 6.부터 위(가)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₩0,000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는,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1의 각 점을

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100㎡(이하 '이 사건 점유 부분'이라 한다)를 권원 없이 점유·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,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 및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.

그러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성지사장에 대한 감정축탁 결과에 따르면,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피고 소유인 전남 보성군 D 대 433㎡ 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·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이민국

별지